

# 고용창출과 고용유지를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병산  
대구대학교 회계학과

## Tax Incentives for Job Creation and Employment Retention

Byung-San Lee

Dept. of Accounting, Daegu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고용창출과 고용유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조세지원제도를 통해 효용성 극대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결과를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창출과 고용유지를 장려하기 위한 세액혜택인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에 대한 중복공제를 허용하고 고용 유발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둘째, 최저임금 기준초과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신설한다. 셋째, 중소기업 위주의 조세지원 대상을 비영리·중견·대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넷째, 기업의 인적자원관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현재 세대 및 미래 세대의 고용창출과 안정을 위하여 조세지원의 일몰기한을 폐지하거나 대폭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조세부담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고용지원 관련 규정의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고용성과를 달성한 기업들에게는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외에 정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고용정책과 조세법의 융합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다.

**주제어** : 융합, 고용유지, 고용창출, 세액공제, 세액감면

**Abstract** This study is aimed at suggesting the establishment strategy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through the tax support system under the 「Tax incentive limitation law」 provided for job creation and employment retention, by which the improvement measurements for utility maximization. The study results are briefly summarized as follows: At first, It's necessary to permit overlapping deduction of the tax favor for encouragement of job creation and employment retention, i.e. tax exemption and tax credit, and to exclude a company from the object for the alternative minimum tax application for maximization of the effect on employment inducement. Secondly, It's necessary to establish tax exemption and a tax credit on the surplus of the minimum wage standard. At last, It's also necessary to abolish, or expand the sunset period of tax support on a large scale to enhance the predictability of human resources management. These discussion are made through the convergence both employment policies and tax laws.

**Key Words** : Convergence, Job creation, employment retention, tax credits, tax exemption

---

\* This dissertation was written of 2013 by the Daegu University academic research funds Support.

Received 28 September 2015, Revised 30 October 2015

Accepted 20 November 2015

Corresponding Author: Byung-San Lee  
(Dept. of Accounting, Daegu University)  
Email: greatsan@daegu.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지금까지의 인적자원관리는 인적자원의 확보·개발·활용·평가·보상·유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계획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기업이 부담해야 할 조세문제는 고려하지 않거나 단순히 고용관련 비용은 회계이익과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소득세법상의 필요경비)을 감소시킨다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고용창출과 고용유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등의 조세지원제도를 통해 기업으로 하여금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은 인적자원을 활용한 조직의 목표 달성과 조세부담의 감소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고, 이는 복잡하고 급격한 환경변화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으로서 고용환경과 세법규정간 융합의 계기가 마련되었다[1].

최근 경기회복과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조세정책이 제시되고 시행되고 있다. Layard and Nickell(1999)은 조세부담을 10% 줄이면 실업률을 약 25%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2], 이철인(2006)도 법인세의 인하는 소폭의 고용증대 효과를 가져온다고 분석하였다[3]. 그리고 Nickell(1977)은 고용이나 실업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조세의 종류나 형태보다는 조세부담의 크기라는 논의를 제시하였다[4]. 또한 Harden and Hoyt(2003)은 고용감소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법인세외 여러 세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5].

기업들은 이러한 조세지원 제도를 적용하여 인적자원을 관리하면 활용 전의 고용비용(손금산입)과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라는 추가적인 조세혜택을 부여받아 총조세부담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고용창출과 고용유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세지원제도가 인적자원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을 동시에 고려하여 인적자원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효과적인 인적자원개발은 세금이 많은 사업비용 가운데 하나임을 인식하고 비세금비용(nontax costs)뿐만 아니라 세금비용(tax costs)까지 포함하는 모든 비용(all costs)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6].

현행 인적자원의 고용창출과 고용유지를 위한 조세지

원제도는 기업이 처한 환경(인사관리, 회계 및 세무적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조세정책으로서 신규 고용창출과 고용유지의 유발효과가 크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기업과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부족문제의 해결, 고용유지, 정규직 확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제고하기 위한 현행 조세지원제도를 발판으로 삼아 본 제도운영의 효용성 제고와 장기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2.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현황

현행 우리나라의 고용과 관련된 조세지원제도를 고용창출, 복직 및 재고용, 고용유지, 취업자 지원의 4가지로 구분하여 현행 세법규정과 수혜자 및 수혜내용을 아래와 같이 살펴보았다.

### 2.1 고용창출 관련 조세지원제도

고용창출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26조)로서 고용과 연계된 투자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사업용자산 투자금액의 2~9%를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한다.

송일호(2009)는 설비투자는 1~2년 후 고용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설비투자시점에서는 고용증가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7].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세지출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조세감면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2012년(실적치) 21,243억원, 2013년(실적치) 17,728억원, 2014년(잠정치) 11,699억원으로 조세감면규모가 줄어들고 있어 본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8].

둘째, 근로자에게 임금을 인상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게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5%(중소기업, 중견기업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규정으로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4)가 있다.

셋째, 중소기업의 고용 의무에 대한 부담 완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4) 규정이 있다. 이는 고용이 증가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증가상당액의 50% 또는 100%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것이다. 조세감면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2013년(실적치) 301억원, 2014년(잠정치) 366억원으로 증가하다가 2015년(전망치)는 382억원으로 증가 수준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본 제도의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요구된다[8].

마지막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청년, 장애인 등을 고용하였을 경우 고용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투자자가 산업지원서비스업과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외국인투자누계액의 50%~70%, 상시근로자 1인당 2천만원~1천만원을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감면을 해주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104조의24 제2항·제3항)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 2.2 복직 및 재고용 관련 조세지원제도

복직 및 재고용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규정으로 첫째,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정책으로써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하였을 경우 인건비의 10%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3)을 규정을 두고 있다.

둘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2)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100만원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해 준다. 추후 정규직 확대와 본 규정의 정착을 위하여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세액공제는 신규 고용창출을 유도할 정도로 충분해야 한다[9]. 그러나 현재의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부족한 측면이 강하므로 추후 금액을 확대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 조세감면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2012년(실적치) 0.57억원, 2013년(실적치) 0.27억원, 2014

년(잠정치)는 0.48억원이다[8].

셋째, 군 미필 특성화고 등 졸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지원 정책으로 중소기업이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사람 중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가 현역병으로 병역을 이행한 후 복직한 경우에는 복직자에게 복직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한 인건비의 10%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 주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2)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 2.3 고용유지 관련 조세지원제도

고용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정책 중 고용유지와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세정책으로 중소기업이 종업원의 근로시간단축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근로자와 중소기업은 임금삭감액의 50%를 종합소득금액(근로자의 경우) 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중소기업)에서 공제하는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30조의3)를 시행하고 있다.

송일호(2004)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의 경우에는 법정 근로시간의 단축은 고용 및 정책임금과 실질임금을 상승시키나 생산성은 향상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용근로자와 생산직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 및 생산성 그리고 정책임금과 실질임금을 모두 상승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10]. 따라서 추후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조세지원제도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 제도를 임금삭감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당 임금이 감소되지 않아야 하고 과다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의 질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하여 적용한다. 조세감면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2012년(실적치) 0.4억원, 2013년(실적치) 0.64억원, 2014년(잠정치)는 0.51억원이다[8].

다음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표준사업장 설립확대를 통한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할 목적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제85조의6 제2항)제도 규정하고 있다.

본 제도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세액을 감면(3년간은 100% 감면, 2년간은 50% 감면)한다.

#### 2.4 취업자 지원 관련 조세지원제도

앞서 살펴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 중에서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30조의3)를 제외하고는 수혜자가 모두 기업이다. 이에 정부는 고용창출 정책의 극대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취업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먼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 제30조) 규정으로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인력지원과 청년·노인·장애인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노인·장애인은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의 50% 세액감면(군복무 후 동일기업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감면기간 2년 추가)한다. 소득감면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2013년(실적치) 16억원, 2014년(잠정치)는 36억원이다[8].

그리고 고부가가치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를 2년간 50%를 세액감면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조특법 제18조)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3. 고용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3.1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중복공제 허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의 지원, 연구 및 인력의 개발, 투자촉진과 고용창출 등의 목적별로 조세감면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특정한 조세감면의 대상이 다른 조세감면의 대상에도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은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중복지원을 배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첫째, 세액공제 상호간에 중복지원 배제로서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동일한 과세연도에 고용창출세액공제(조특법 제26조) 및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4)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

여 적용받을 수 있다.

둘째,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상호간 중복지원 배제로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 등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26조) 등이 동시에 적용되고 동일한 과세연도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셋째,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각종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고용창출을 위한 조세정책상의 유인책으로 실효성이 없고, 조세혜택 규모도 작아 고용창출 효과가 미비하다. 따라서 고용지원과 관련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중복공제를 허용해야 한다.

#### 3.2 최저한세 적용대상 제외

현행 세법은 기업이 조세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 과다한 조세감면의 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한 일정수준 이상의 세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최저한세제도(alternative minimum tax)를 두고 있다[11].

고용지원과 관련한 세법규정들도 고용창출이라는 국가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지만 조세감면을 적용받더라도 최소한 일정수준 이상의 세액을 부담하도록 최저한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최저한세제도로 인하여 다양한 고용지원 조세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고용수준을 결정할 때 조세감면이라는 혜택을 주된 결정요인이 아닌 부차적인 요인으로 간주하고, 조세지원제도를 중복하여 활용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므로 기업은 추가적인 고용창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즉 조세지원 정책의 종류는 많아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조세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고용유발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고용창출에 따른 조세감면 사항들을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 3.3 최저임금기준초과액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2015년(5,580원)보다 8.1% 인상된 6,030원으로 확정 고시되었다. 이에 노동계는 “정부와 사용자가 노동자를 배신하고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했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경영계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도산과 신규채용 축소 등이 잇따를 수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12].

이러한 노동계와 사용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고용창출이라는 국가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최저임금액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추가하여 사용자측에게는 고용비용에 따른 재정건정성을 제고시켜 도산방지 및 신규채용을 확대시키고,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 증대와 세액감면을 통해 소득세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상생고용 지원제도”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고용 전망 2015’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 2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노동자 중 최저 임금 또는 그 이하의 소득을 버는 노동자의 비율은 평균 5.5%다. 한국의 경우 최저임금 또는 그 이하 소득을 버는 노동자 비율은 14.7%로 조사대상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13].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최저임금액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안)의 수혜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초과분을 지급하는 개인사업 및 중소기업과 최저임금액 초과분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다.

수혜내용은 사용자가 지급한 “최저임금초과액×100%”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에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근로자의 경우에는 동 금액을 근로소득세에서 감면하는 것이다.

### 3.4 세제지원 대상기업 확대

대부분의 고용과 관련한 세제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이며, 일부 근로자와 중견기업 및 대기업에 한 하여 조세감면의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고용창출 여력이 강하지만 법인세 및 소득세의 부담은 높지 않아 조세감면에 따른 조세지원 효과가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 또한 고용문제는 기업의 크기에 구분 없이 모든 기업을 대상을 조세지원정책을 강구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세제혜택인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4),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2), 경력

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3), 정규직 근로자의 전환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30조의2),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30조의3) 등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기업을 중견 및 대기업으로 확대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 3.5 정부보조금을 통한 실효성 제고

소득세 및 법인세의 조세부담이 없는 기업의 경우 고용창출 등을 촉진하기 위한 현행 조세지원제도는 이들 기업들에게 고용창출에 따른 동기부여 요소로 작용하기 어려워 정부정책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조세부담이 존재하지 않는 기업에게는 현행 고용지원과 관련한 조세지원제도가 유명무실화 될 수 있어 정부는 추가적인 조세혜택 및 동기부여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고용지원 관련규정의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고용성공을 달성한 기업들에게는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외에 정부보조금의 지급을 통한 추가적인 고용지원 촉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Perloff and Wachter(1979)도 미국의 기업들은 주어진 보조금의 범위를 고려하여 신규고용인을 결정한다고 보고하였다[14].

### 3.6 일몰기한 연장 및 일몰기한 삭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고용지원과 관련한 조세규정의 일몰기한을 살펴보면 2015년 12월 31일까지 5개, 2016년 12월 31일까지 1개, 2017년 12월 31일까지인 규정이 4개이다. 정부에서는 최우선적으로 2015년 12월 31일까지인 일몰기한을 연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일몰기한 규정들은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기업에서 고용창출과 관련한 계획·실행을 단기적인 관점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어 고용창출의 효과가 유지 또는 확대될 수 없다. 미국의 경우에도 세제혜택 기간의 연장을 통해서 회복기에 있는 미국 경제의 성장을 더욱 촉진하고 있다[15].

따라서 고용정책은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문제이므로 기업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장기적인 고용정책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일몰기한의 대폭 연장 또는 삭제를 통한 중·장기적인 조세지원

이 요구된다.

#### 4. 결론

본 연구는 기업과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부족문제의 해결, 고용유지, 정규직 확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지원제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조세지원제도의 효율성 제고와 장기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 고용지원 관련 세법규정은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중복을 배제하고 있어 고용창출을 위한 유인책으로 작용하기에는 조세혜택 규모가 작아 고용창출 효과가 미비하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고용지원과 관련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중복공제를 허용하여 실효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고용지원과 관련한 세법규정은 고용창출이라는 국가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지만 조세감면을 적용받더라도 최소한 일정수준 이상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최저한세를 적용받고 있다. 이는 기업에 대해 추가적인 고용창출 노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고용유발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고용창출에 따른 조세감면 사항들을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을 증대시키고, 사용자에게는 비용증대에 따른 재정 건정성 제고와 신규채용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법정 최저임금액 초과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제도의 신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현행 중기업 위주의 조세지원 대상 기업을 비영리법인을 포함한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확대하여 세법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섯째, 「조세특례제한법」의 특성상 일몰기한이 있으나 고용문제는 현대 및 미래세대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일몰기한을 폐지하거나 대폭적으로 연장시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세부담이 없는 기업의 경우에는 조세지원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사항은 고용관련 의사

결정과정에서 동기부여 요소로 작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고용지원 관련 세법규정의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고용성과를 달성한 기업들에게는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외에 정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와 같이 기업의 재무적, 세무적, 인부분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세정책을 입안할 경우 본 제도의 효율성 제고와 장기적인 성과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정부의 조세부과 및 조세혜택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따른 세부적인 통계수치를 공시하지 않아 실증분석을 통한 실증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점을 지니며, 향후는 통계수치를 활용한 고용촉진 및 고용유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더불어 정부의 재정지출의 효과까지 검증되는 연구가 있기를 기대한다.

#### ACKNOWLEDGMENTS

This dissertation was written of 2013 by the Daegu University academic research funds Support.

#### REFERENCES

- [1] S. I. Choi, & S. B. Song., "A Study on The Effect Financial Performance of Convergence Factors on Corporat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8, pp. 123-131, 2015.
- [2] Layard, R. & Nickell., "Labor Market Institutions and Economic Performances", in Ashenfelter, O. and Card, D. (eds) Handbook of Labor Economic, 3(c). 1999.
- [3] Soon-Sin Lee, "Employment Effects of the Korean Tax System", Journal of Korean Economic Analysis, pp.65-146, 2006.
- [4] Nickel, S., "Unemployment and Labor Market Rigidities: Europe versus North America",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11, No. 3, pp. 55-74, 1997.

- [5] Harden, William & William H. Hoyt, "Do States Choose Their Mix of Taxes to Minimize Employment Losses?", *National Tax Journal*, Vol. 56, No. 1, pp. 7-26, 2003.
- [6] Scholes, M., Wolfson, M., Erickson, M., Maydew, Shevlin, T., "Taxes and Business Strategy: A Planning Approach", 2nd Edition. Prentice Hall, Upper Saddle River, NJ. 2001.
- [7] I. H. Shong, "An Economic Analysis on the Effect of Facility Investment on Productivity and Employment", *Productivity Review*, Vol. 23, No. 3, pp. 259-278, 2009.
- [8] Statistical Yearbook of National Tax Home page, <http://www.stats.nts.go.kr>
- [9] C. J. Shim, & Y. C. Kim, "Tax Incentives for Employment Promotion", *Journal of Taxation and Accounting*, Vol.12, No.2, pp.175-197, 2011.
- [10] I. H. Shong,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of a Shorter Working Hours on Employment, Productivity, and Unit Labor Costs", *Productivity Review*, Vol. 18, No. 1, pp. 65-80, 2004.
- [11] S. Y. Lim, & J. W. Jung, "Tax Law", 2015.
- [12] DOL: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08/0200000000AKR20150708195400004.HTML>
- [13] OECD Employment Outlook 2015
- [14] Perloff, Jeffrey and Michael L. Wachter, "The New Jobs Tax Credit: An Evaluation of the 1977-78 Wage Subsidy Program", *The American Economic* Vol. 69, No. 2, pp. 173-179, 1979.
- [15] The American Jobs and Closing Tax Loophole Act, HR4213

**이 병 산(Lee, Byung San)**



- 2004년 2월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세무학석사)
- 2009년 8월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세무학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대구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조세전략, 조세회피, 세무회계, 이익조정
- E-Mail : greatsan@daegu.ac.kr